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2. 17 선고 2020가합53365 판결 [용역(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묵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이창우, 배종수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2. 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분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조경공사 설계, 시공, 관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공사계약의 체결 등

- 1) 원고는 2020. 7.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서구 C 재생사업 기반시설공사 중 가로수 및 띠녹지 식재공사를 계약금액 176,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다(다음부터 위 공사를 ‘제1공사’라 하고 위 공사 관련 계약을 ‘제1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20. 4. 27. 피고와 사이에 대구 혁신도시 소재 D공사를 계약금액 3,080,000원에, E 조경하자공사를 계약금액 880,000원에 각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부터 위 공사를 통틀어 ‘제2공사’라 하고 위 공사 관련 계약을 ‘제2계약’이라 한다).
- 3) 원고는 2020. 5.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F 주식회사(다음부터 ‘F’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G 기타공사 중 잣나무 189주, 소나무 137주, 산철쭉 411주, 수목이식 및 정식 상수리 275주 등의 조경 관련 용역공사를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부터 위 공사를 ‘제3공사’라 하고 위 공사 관련 계약을 ‘제3계약’이라 한다). 한편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5호증, 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금액 : 일금일억사천팔백만원정(₩ 148,000,000) V.A.T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4) 원고는 2020. 6. 17. 피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H, 대구 동구 I, 대구 수성구 J의 각 조경 하자보수공사를 계약금액 40,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부터 위 공사를 통틀어 ‘제4공사’라 하고 위 공사 관련 계약을 ‘제4계약’이라 하며, 제1 내지 4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제1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5. 12. 23,820,500원, 2020. 7. 22. 102,279,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13. 10,000,000원(다음부터 ‘제1금원’이라 한다), 2020. 3. 18. 20,000,000원(다음부터 ‘제2금원’이라 한다), 2020. 5. 27. 30,000,000원(다음부터 ‘제3금원’이라 한다), 2020. 6. 5. 10,000,000원(다음부터 ‘제4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제1계약에 따라 제1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제1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청구원인).

2) 원고는 제2계약에 따라 제2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제2공사대금 3,9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2청구원인).

3) 원고는 제3계약에 따라 제3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약정 공사대금 162,800,000원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3공사대금 162,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3청구원인).

4) 원고는 제4계약에 따라 제4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제4공사대금 40,150,000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4공사대금 40,1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4청구원인).

나. 피고의 주장

- 1) 피고는 제1공사대금으로 제2, 3금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5. 12. 23,820,500원, 2020. 7. 22. 102,279,5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76,1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제1, 4금원 합계 20,000,000원은 제3공사 관련 선급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와 별개로 대구 K 조경공사 중 수목하자보수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K 공사’라 한다)를 용역대금 7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서 2020. 4. 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제1 내지 4금원은 위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
- 2) 원고가 제2계약에 따라 제2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공사대금 3,96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 3) 원고는 제3, 4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3, 4공사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제3계약의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48,000,000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만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72210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그 일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 일의 완성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 참조).

나. 제1 내지 4금원의 지급 경위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 3금원 합계 50,000,000원은 피고가 제1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피고는 제1, 4금원은 제3공사계약의 선금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공사계약의 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K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제1내지 4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K 공사의 원수급인은 L 주식회사(다음부터 'L'이라 한다)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공사와 관련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원고와 L 사이에는 L이 위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하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K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제1내지 4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K 공사 당시 피고의 부사장인 M을 통하여 구두로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완성하였으나 피고의 요구로 원고와 L 사이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위 K 공사와 관련한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일 뿐만 아니라 L은 피고의 자회사 내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제1 내지 4금원은 이 사건 K 공사의 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의 증언이 있으나 위 M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피고를 퇴사하게 된 점, M의 증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제2, 3금원 합계 50,000,000원과 피고가 제1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23,820,500원 + 102,279,500원)의 합계는 제1계약의 약정공사대금 176,100,000원과 일치한다.

다. 제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제1공사를 완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1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5. 12. 23,820,500원, 2020. 7. 22. 102,279,5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바와 같이 제2, 3금원 합계 50,000,000원은 피고가 제1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1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1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라. 제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2계약에 따른 제2공사를 완료한 사실, 제2공사대금 중 3,960,000원이 미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2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3,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제3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3계약의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3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3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3청구원인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에게 제3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일의 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제3공사의 원도급인인 F로부터도 일의 완성과 관련된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제4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4계약의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4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이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4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제4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에게 제4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일의 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제4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시켰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4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인으로부터 일의 완성에 대한 확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2020. 4. 이후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N 및 O공제조합으로부터 제4공사 관련 수목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독촉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20.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위 공사 관련 수목하자보수공사를 스스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2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지선경 출산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우영식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148,000,000원 V.A.T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하여 기재된 것이고, 제3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2,8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